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38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박성훈 · 이현승 · 김성원
박충권 · 김위상 · 고동진
서명옥 · 김기웅 · 박수영
이상희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지급·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중 단일한 종류의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중 단일한 종류의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4.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4. ~ 20. (생 략) ② (생 략)	